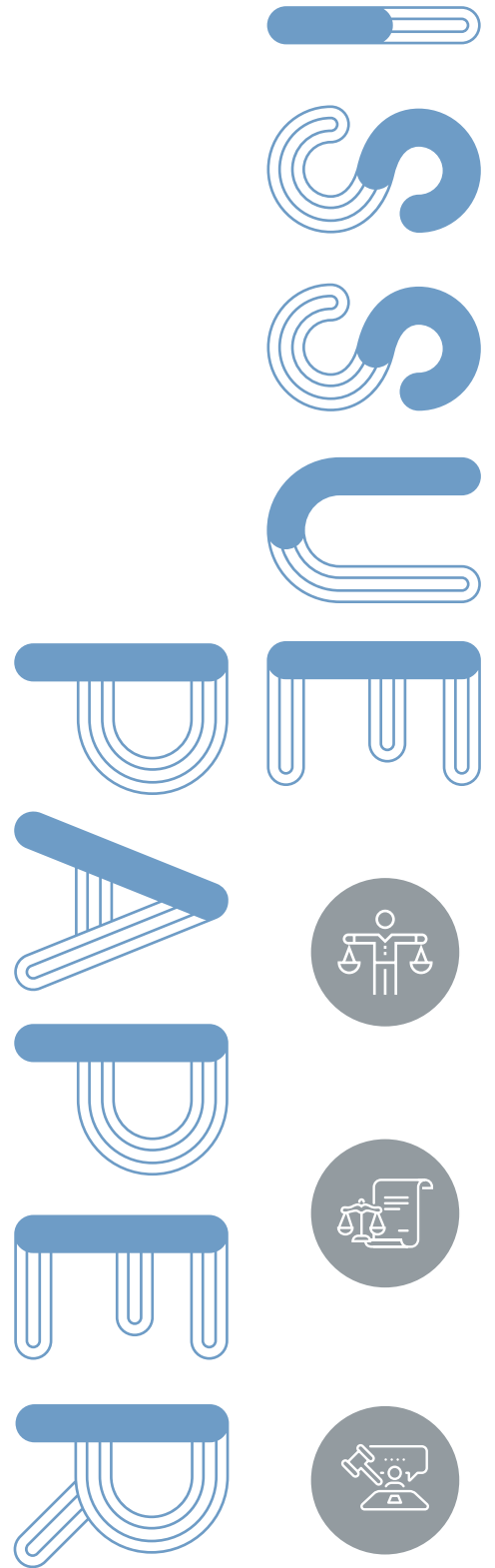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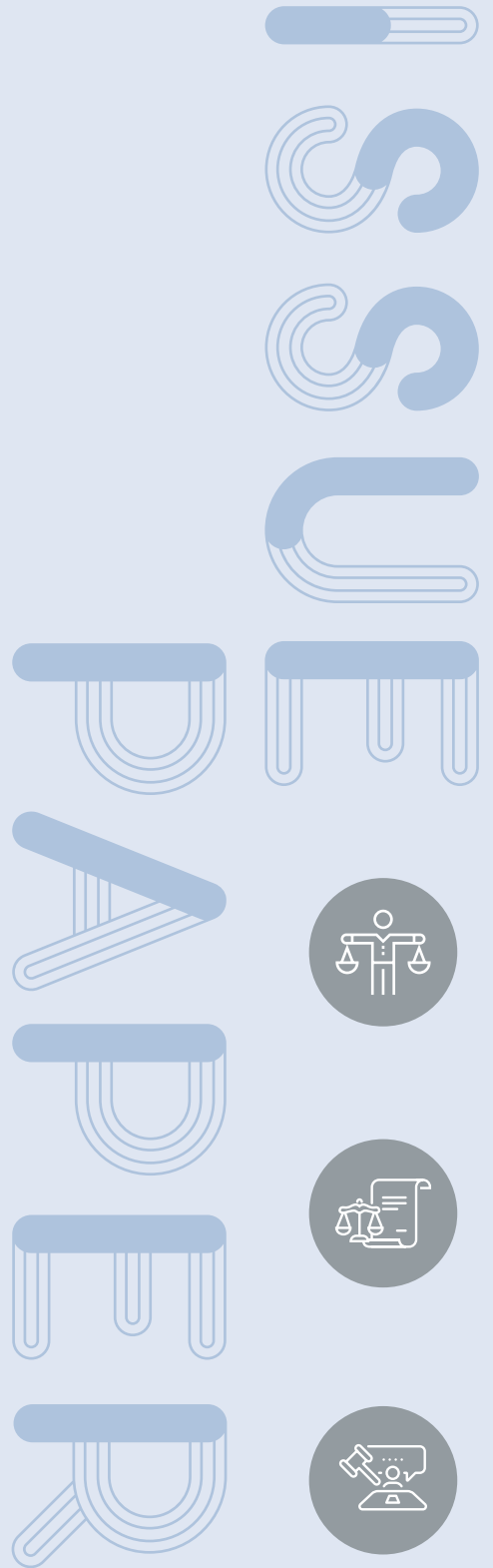
# 데이터 3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 방안

구본규



# 데이터 3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 방안

구본규(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CONTENTS

---

ISSUE  
PAPER

## 요약문

5p

##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기준

Chapter

1

- 11 1. 입법평가의 필요성
- 11 2. 입법평가의 기준

10p

##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Chapter

2

- 14 1. 개인정보보호법
- 16 2. 신용정보법
- 18 3. 정보통신망법

13p

##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

Chapter

3

- 20 1. 개인정보보호법
- 27 2. 신용정보법
- 28 3.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차이

19p

## 데이터 3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Chapter

4

- 33 1.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의 효과성 평가
- 36 2.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체계성 평가
- 38 3.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형평성 평가

32p

##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Chapter

5

- 43 1.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 정비
- 44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의 규정 정비
- 45 3. 가명정보 활용 방식 보완
- 46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및 독립성 강화
- 47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정비

42p

## 참고문헌

49p

# 데이터 3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 방안

구분규<sup>1)</sup>

## 요약문

### I.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기준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개정·시행되고 약 2년 후에 시행되는 사후적 입법평가로 당초 법 개정 목표가 달성되었는지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입법과정에서 시행한 사전적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 법 개정의 실효성과 효과성, 법 적합성과 체계성 및 입법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쟁점을 파악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 II.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데이터 3법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법률	내용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개념·범위 및 판단 기준 제시	행정안전부
	가명정보의 제도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 및 독립성 확보 조치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의 정비	
	가명정보의 활용을 위한 특례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 정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도입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의 정비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1)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III.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도록 되어 있으나, 데이터 3법 개정의 주된 목적이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데이터 활용 방법과 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 및 감독기구와 관련 법령의 유사·중복규정의 일원화인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 구분하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추가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이 있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추가 정보와 다른 정보의 사용·결합으로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자들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사업상 활용이 가능하고,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법률의 고려 사항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절차나 방법 등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이전하려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보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외의 실질적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이 없는 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음.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전송요구권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본업으로 하며, 이러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정보를 집적하여 정보주체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보 포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상품 등의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와 정보주체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신용정보법에서 다양한 금지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해상충행위를 모두 규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의 권리라는 점에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해당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그대로 원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운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은 향후 전송요구권 확대 논의에 대비해서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용정보법에서 신설된 자동화평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평가 등에 대한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하는 경우 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이나,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GDPR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에는 미치지 못함.

#### IV. 데이터 3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의 효과성 평가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와 가명처리를 각각 정의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면에서 동어반복에 가깝고, 법 전반에 걸쳐 가명처리라는 용어는 개념정의에서만 사용하고 있음. 또한, 과학적 연구를 별도로 정의하면서 민간 투자 연구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명시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판단하더라도 별도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인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개념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적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바, 어떤 상황에서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위험성을 가지는지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의결 사항 중 극히 일부로 법률에서 열거 하였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다원성과 독립성은 약화된 측면이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체계성 평가

- 데이터 3법 개정의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 2021. 9. 28.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그대로 두고, 기본법에서 주로 규정하는 방식인 유도적·주요적 성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상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할 것임. 최소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핵심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익명처리에 관한 개념 정의를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의 우선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4건은 법체계상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익명처리의 범위와 내용이 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형평성 평가

- 가명정보의 생성 자체부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이로써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각종 권리와 의무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율방식은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성과 수집된 목적과 다르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은 물론 취약한 지역으로도 이전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법의 장소적·대인적 효력의 한계가 문제될 수 있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는 침해의 정지나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관리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용정보법에서는 자동화평가(profiling)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용정보주체가 유리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의 정정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만 가지고,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이용하는 것에 반대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점차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추세라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음.

## V.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별법의 특성과 거리가 있고,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효력이나 체계적인 면에서도 실익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을 적용하도록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본법과 같은 유도적, 지침적 성격을 갖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와 방법 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용정보법 등 다른 개별 법률에서는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개념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행 법령과 같이 가명정보의 생성 자체부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권리와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적어도 개인정보주체에게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처리중지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가 독립성 및 실효적 권한을 갖추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유사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직속에 두도록 하고, 소관 업무 중 국무총리의 지휘·감독권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종전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후퇴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고위공무원, 부서의 장, 사업주 또는 임원 등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적 지식 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나 자격증 보유 등과 같은 전문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Chapter

---



##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기준

- 11 1. 입법평가의 필요성
  - 11 2. 입법평가의 기준
-

#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기준

## 1. 입법평가의 필요성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세 법률을 통칭하는 것으로 2020년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음.

입법과정에서부터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만큼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과 기업의 이윤추구 우선에 따른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사용 등 많은 우려<sup>2)</sup>가 있었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sup>3)</sup>를 수행한 바 있음.

이 시점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우려와 사전적 입법평가 결과 등이 입법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또 그것이 실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는 데이터 이용을 통한 관련 신산업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함.

## 2. 입법평가의 기준

입법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사전입법평가, 병행입법평가, 사후입법평가로 구분할 수 있고,<sup>4)</sup> 데이터 3법과

2)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표명과 성명을 발표(2019. 7월과 11월)한 바 있고,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직후에는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3) 심우만·박용숙·박지윤,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9.

4) 강현철,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일반론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33-48면.

같이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는 사후입법평가에 해당하며, 입법 당시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은 없는지, 법 시행 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상충이나 비효율 등의 문제는 없는지, 실용적이고 준수가능한지 등을 분석<sup>5)</sup>하는 것이고, 「행정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입법영향분석(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그 맥을 같이 함.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되고 약 2년 후에 시행되는 사후적 입법평가에서는 당초 법 개정 목표가 달성되었는지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쟁점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의 효과성,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체계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형평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 대안을 제시하겠음.

입법평가는 법 개정의 실효성과 효과성, 법적합성과 체계성, 입법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하되, 아래 표와 같은 세부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함.

표 1 입법평가리스트<sup>6)</sup>

분석항목	세부기준
실효성·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의 취지와 목적이 법률안의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li> <li>- 규제적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제는 적절하고 효율적인가?</li> <li>- 법률 시행을 통한 효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li> <li>- 법률은 집행가능한가?</li> <li>- 법률 집행에 있어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li> <li>- 법률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인가?</li> </ul>
법적합성·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률 등과는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li> <li>- 다른 법률을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히 인용하였는가?</li> <li>-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가?</li> <li>- 위임의 형식이나 범위는 적절한가?</li> </ul>
입법의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입법으로 인하여 피해나 차별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는가?</li> <li>- 규제로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이 존재하는가?</li> <li>-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단체는 어디이고 이유는 무엇인가?</li> <li>- 우대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내용이나 정도는 적절한가?</li> </ul>

5)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현행 법령분석 즉 입법영향분석은 ①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②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③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함.

6) 홍성민·김은영·양천수·이동진, 「K-방역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21, 25~26면.

# Chapter

---



##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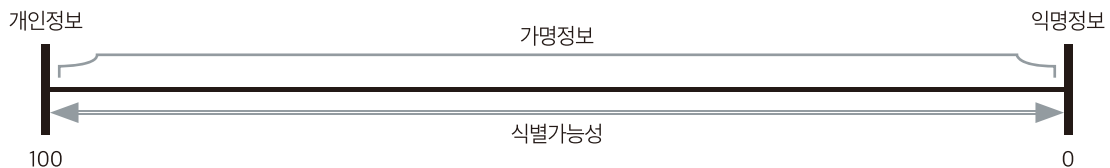
- 14 1. 개인정보보호법
  - 16 2. 신용정보법
  - 18 3. 정보통신망법
-

#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 1. 개인정보보호법

### 가. 개인정보 개념·범위 및 판단 기준 제시

-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제2조제1호), 개인정보 여부의 판단에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하고,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제58조의2) 소위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함.
-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식별가능성이 낮을수록 익명정보에 가까워지고, 높아질수록 개인정보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고, 개인정보와 익명정보 사이에 있는 정보를 가명정보로 볼 수 있음.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 나. 가명정보의 제도화

-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그를 합리적,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8 및 제28조의2).

-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28조의3),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71조제4의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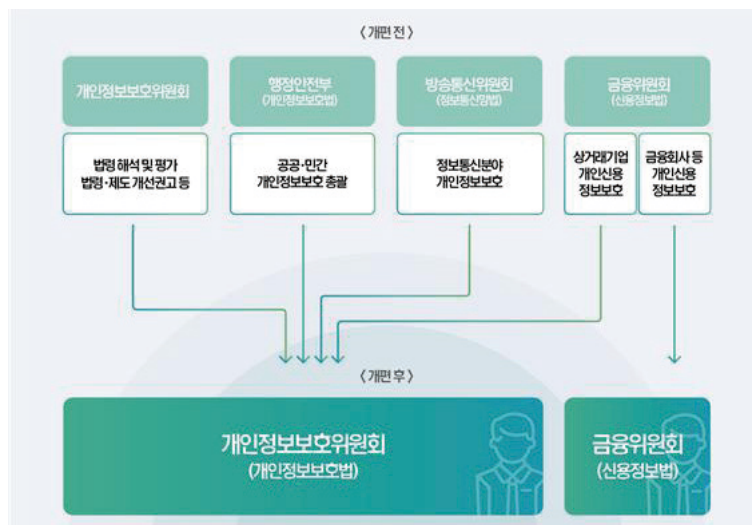
#### 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sup>7)</sup>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시킴(제28조의4 및 제28조의5).
-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사 처벌 외에 전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등).

#### 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 및 독립성 확보 조치

-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합의를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3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됨(제7조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개편 전·후 비교><sup>8)</sup>



7) 안전조치 의무 :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및 제3자 제공 금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가능 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 없는 처리 중단 및 회수·파기 등을 말한다.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9년 만에 드디어 통합 감독기구 탄생 - 데이터3법 본격 시행으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출범-”, 2020.8.5.

- 또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제18조에 따른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함(제7조제2항 단서).

## 2. 신용정보법

### 가.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확대

-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구분함(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정보로(제2조제16호) 정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익명처리에 대하여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함(제2조제17호).

### 나.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의 정비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함(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제6항, 제20조제4항·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 다. 가명정보의 활용을 위한 특례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

- 통계작성 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제32조제6항제9의2호) 한편, 가명정보의 활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 및 처리 중지 및 정보 즉시 삭제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함(제40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항).
-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도록 함(제17조의2).

### 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 정비

-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예외 사유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 동의 예외 사유 외에도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로 처리한 경우,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함(제32조제6항).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요건으로,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의 직접 제공 등의 경우 외에 앞서 설명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등을 개인신용정보 이용 요건으로 정함(제33조).

#### 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도입

- 기존 신용정보업의 관리 체계에서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하나로 신설함(제2조제4호).
- 새로 도입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기반으로 분산되어 있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2조제9의2호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0항).
- 종전에는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수집해야 했던 개인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됨.

#### 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정비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을 신용정보업으로 개편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를 각 사업에 맞게 조정함(제2조제4호 및 제6조).
-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계열회사의 신용평점을 높이는 불공정행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 3. 정보통신망법

#### 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의 정비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과 유사·중복된 다수의 규정을 이관하거나 삭제(개인정보의 정의, 제22조에서 제32조의5까지 지정되어 있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과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의2에서 규정된 국외이전, 과징금 부과 관련 조항 등)하여 법안의 명료성, 체계성, 일관성을 강화함.

#### 나.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변경함.

표 2 데이터 3법 개정 주요 내용

법률	내용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개념·범위 및 판단 기준 제시	행정안전부
	가명정보의 제도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 및 독립성 확보 조치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의 정비	
	가명정보의 활용을 위한 특례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 정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도입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의 정비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 Chapter

---

# 3



##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

- 20 1. 개인정보보호법
  - 27 2. 신용정보법
  - 28 3.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차이
-

##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

### 1. 개인정보보호법

#### 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성격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데이터 활용 방법과 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 및 감독기구와 관련 법령의 유사·중복규정의 일원화가 그 개정의 주된 목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적어도 기본법과 같은 지도·지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의 다양성·복잡성은 피할 수 없을 것임. 적어도 개인정보의 개념과 일반적 행위 기준 등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성격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공)  
- 의안번호 24495. 2020. 1.-

-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 나. 가명정보와 다른 정보의 구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제1호다목 및 제2조제1의2호).
- 가명정보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에 규정된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와 다르고, 가명정보와 제2조제1호나목의 개인정보는 모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제2조제1호나목의 개인정보와 구분됨.<sup>9)</sup>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 12.)에 따르면, 가명처리의 기술이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가명정보(가명처리된 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하므로 단순히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 기술적 처리를 한 것만으로는 가명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처리 결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제대로 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sup>10)</sup>고 함.
-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사용된 정보로 제한”되고,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 전 정보로 되돌릴 수 있는 정보(복원(復元)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sup>11)</sup>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12, 13면.

10) 해설서에서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일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다른 정보로 대체하였으나 해당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가명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12, 13면.

- 이상의 설명에 따르면, 제2조제1호나목의 다른 정보와 추가 정보는 해당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당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라면 처리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접근·입수할 수 있는 정보 모두가 다른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따르면 추가 정보와 다른 정보의 개념과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추가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이 있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추가 정보와 다른 정보의 사용·결합으로 개인 정보의 침해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다. 입수가능성과 결합용이성에 대한 판단

- 개인정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 이때 결합의 용이성은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조제1호나목).
- 여기서 ‘입수 가능성’은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그 결합에 필요한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해킹·절취(切取)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sup>12)</sup>고 하더라도 결합의 용이성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의 합리적 고려는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이후 해당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방법 또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 의한 정보의 입수와 결합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그에 대한 판단 또한 규제 당국이나 법원에 의해 개별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임.

#### 라. 가명정보의 생성 및 활용

- 가명정보의 이용·제공·결합 등 제반 활용에 앞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정보를 생성하여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의 생성과 관련하여 ‘생성’자체에 대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권 유무를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나, 제28조의2제1항 및 제2조제2호 ‘처리’의 정의와 연계하여 해석하면 가명정보의 ‘생성’ 그 자체에 대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가명처리, 곧 가명정보의 생성에 대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공익적 목적을 요구하고, “(1단계)사전준비-(2단계)가명처리-(3단계)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4단계)활용 및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12, 12면.

사후관리"라는 절차로 규제<sup>13)</sup>함으로써 엄격히 통제하는 체계적 부정합을 일으키고 있음.<sup>14)</sup>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생략)

### 마.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자들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사업상 활용이 확대됨.
- 이에 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③ (생략) <u>&lt;신 설&gt;</u>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중전과 같음) 1. (중전과 같음)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 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③ (중전과 같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9-23면.

14) 최규환,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이론과 실무 2021-A-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61-64면.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① 당초 수집목적과의 관련성 ②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 ③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 ④ 안전성 확보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①과 ②의 사항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대한 해석규정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③과 ④는 법률의 고려 사항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절차나 방법 등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적인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상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종전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데이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적 지식 등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전문성에 따른 자격요건<sup>15)</sup>이 아닌 고위공무원, 부서의 장, 사업주 또는 임원 등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15)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제37조제5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문적 자질,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실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제39조에서 언급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근거하여 지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7. (생략)

③~⑤ (생략)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아. (생략)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생략)

## 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종전 단순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시책마련(제14조 국제협력), 국외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과 법에 위반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의 금지를 규정한 것(제17조<sup>16)</sup>)에서

16)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사항임.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나아가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이전하려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에 필요한 고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 개인의 국제거래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는 생략 가능)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정보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안전성이 보장된 경우에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외의 실질적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이용자의 동의 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제39조의15)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를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부과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생략)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6. (생략)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⑧ (생략)

---

## 2. 신용정보법

### 가. 고객의 거래내역 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에서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신용정보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거래내역 정보도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로 해석할 수 있게 됨.
- 이 경우 결국 고객 정보에 대해서도 신용정보법이 적용할 수 있게 되므로 데이터 3법 개정 당시 일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로 한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신용을 판단할 때 거래내역 정보를 신용정보로 해석하는 경우 규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sup>17)</sup>

### 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 대한 행위 규제와 전송요구권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전송요구권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본업으로 하며, 이러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정보를 집적하여 정보주체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보 포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상품 등의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와 정보주체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다양한 금지유형들을 도입<sup>18)</sup>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해상충행위를 모두 규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sup>19)</sup>
-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일종으로 도입하였고, 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

17) 농림수산식품부, 「데이터 3법 개정관련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2021, 25-26면.

18)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1항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6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행위 규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9) 농림수산식품부, 「데이터 3법 개정관련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2021, 34면.

전송요구권도 함께 도입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 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위 두 가지 제도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의 권리라는 점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전송요구권 확대 여부 논의에 대비해서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sup>20)</sup>

#### 다. 자동화(프로파일링)된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 신용정보법에서 신설된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에 따르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평가 등에 대한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와, 실시하는 경우 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이나,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 요구를 할 수 있음.
-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이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자동화평가 시행 여부, 결과, 기준,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한 설명 요구를 받고도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이하 “GDPR”)에서는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이용하는 것에 반대할 권리(제22조<sup>21)</sup>)를 가지는 반면,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주체가 유리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의 정정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만 부여하고 있고, 신용정보 이용자가 주체에게 설명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GDPR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약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sup>22)</sup>

### 3.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차이

#### 가.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의 정의

- 신용정보법에서는 어떤 정보주체와 다른 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와 하나의 정보집합물에서나 서로

20) 윤주호, 「금융분야에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관련 국내 법제 동향」, 『경제규제와 법』, 2020.5, 153면.

21) GDPR. 제22조(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 결정) ① 데이터 주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자신과 관련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그와 유사하게 자신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② 제1항은 결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데이터 주체와 데이터 컨트롤러 간의 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필요한 경우;

(b) 컨트롤러가 적용되는 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의해 승인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또는

(c) 데이터 주체의 명시적 동의에 근거합니다.

22) 한윤수·류현숙,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20.3, 13면.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등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가명처리에 포함하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 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p> <p>나. 하나의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 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p> <p>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 현재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없음)</p>

-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개념에 대해 법률상 표현은 다소 다르게 되어 있으나, 데이터 분석·이용의 활성화라는 동일한 입법목적 하에 도입된 개념으로 법률 해석상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sup>23)</sup>이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의 예로써 제시하면서 가명처리를 정의하고 있는 반면, 신용정보법에서는 가명처리 방법에 대한 예시 없이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등의 처리 방법을 추가적으로 가명처리에 포함하고 있는 바, 두 개념을 해석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생길 수 있음.
-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추가 정보를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사용된 정보로 제한’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해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정보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의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12, 14면.

규정에 의해 가명처리에 포함되는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에서 의미하는 추가정보가 동일하게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사용된 정보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익명처리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 제2조제17호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별도의 정의 없이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제외만을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의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 혼란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가명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차이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28조의2제1항)하고,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제2조제8호)”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 신용정보법에서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에서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제32조제6항제9의2호)고 명시하여 상업적,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생략) ②~⑤(생략)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생략)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9의4· 10· 11.(생략) ⑦~⑩(생략)

- 신용정보법에서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특히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가 개인정보보호법의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통계작성과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해석에 따라 가명정보의 실제 활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sup>24)</sup>

#### 다. 정보집합물의 가명정보성<sup>25)</sup>

-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결합과 관련하여 결합 대상을 가명정보로 규정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후에도 다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용정보법은 데이터 결합과 관련하여 정보집합물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집합물의 정의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제2조 제15호나목)”로 규정하고 있어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인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p>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p> <p>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생략)</p>

- 따라서, 신용정보법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음. 특히 데이터 결합의 대상이 처음부터 가명정보인 경우 실제로 결합 데이터가 산업에 유의미하게 이용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가명성 또는 익명성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신용정보법의 정보집합물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4) 한윤수·류현숙,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20.3, 10면.

25) 농림수산식품부, 「데이터 3법 개정관련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2021, 25면.

# 4



## 데이터 3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33 1.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의 효과성 평가
- 36 2.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체계성 평가
- 38 3.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형평성 평가



## 1.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의 효과성 평가

### 가. 가명정보 등에 대한 개념 정의와 활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와 가명처리를 각각 정의하고 있으나, 가명처리에 기반한 가명정보에서는 오히려 동어반복에 가까운 가명처리의 개념적 정의(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기술 및 체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sup>26)</sup> 사전적 입법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어반복에 가까운 가명정보와 가명처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전반에 걸쳐 가명처리라는 용어를 개념정의에서만 사용하고 그 후의 규정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과정에서 상업적인 연구 및 통계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었고, GDPR의 내용에 따르면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상업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기술적으로 개념 정의에 주의가 필요함. 특히, 제2조에서 과학적 연구를 별도로 정의하면서 '민간 투자 연구'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명시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판단하더라도 통계작성이나 공익적 기록 보존 등과 달리 과학적 연구 개념을 별도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움.<sup>27)</sup>
- 더욱이,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적인 동의 등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면서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26) 심우민·박용숙·박지윤,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9, 172-173면.

27) 위의 책, 176-177면.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차이가 있는지 혼란을 유발함.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인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개념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적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바, 어떤 상황에서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위험성을 가지는지 또는 가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sup>28)</sup>

##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

- 유엔, 유럽연합, ICDPCC(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등 국제기구의 기준, 주요 선진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가 독립성 및 실효적 권한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적인 요소는 ①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공기관일 것 ② 정부의 지시·승인·간섭 등에서 분리·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③ 투명성, 보편성, 다원성을 갖춘 구성원 임명과 조직 구성 절차를 갖출 것 ④ 독립적·실질적인 조사 및 처분 권한을 가질 것 ⑤ 행정적 자원(인사,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⑥ 국회, 정부, 국민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권한을 가질 것 등으로 도출할 수 있음.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개정 전 대통령 소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격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특히, 유사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민간영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도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두면서 합의제 중앙행정 기관으로 하는 것이 위상 강화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음.<sup>29)</sup>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는 독립성 확보와도 연계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면서,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업무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①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③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의결 사항<sup>30)</sup> 중 일부에 불과하여 업무 전반에 대해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업무 영역의 확대가 필요함.

28) 이러한 우려는 심우민 등이 수행한 사전적 입법평가에서도 언급되었으나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

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9.8.21.

30)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 및 제7조의9.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효과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구성원 임명의 투명성, 보편성, 다원성 등의 확보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다원성은 개정 전보다 오히려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p>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생략)</p> <p>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u>15명 이내의 위원</u>으로 구성하되, 상임 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u>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p> <p>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p> <p>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⑤ ~ ⑨ (생략)</p>	<p>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9명의 위원</u>으로 구성한다.</p> <p>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u>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u>,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 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p> <p>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p> <p>③·④ (생략)</p>

## 2.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체계성 평가

### 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적 체계

-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같은 분류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기본법이라는 제명의 법률이 많이 제정되고 있음.<sup>31)</sup>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상대적이며, 기본법 또한 그 성격에 따라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것과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서 지도법 및 기준법으로서 개별법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많음.<sup>32)</sup>
-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법률의 제명을 「○○특별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법이라는 제명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 있고,<sup>33)</sup> 특별법이라는 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법률 중에도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 적지 않음.<sup>34)</sup> 결국 특별법과 일반법의 구별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두 개념의 구별의 실익은 법의 효력 및 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 데에 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그 법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대해 특별법적 관계에 있게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특별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해당 법률이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을 위 기준에서 본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라고 할 것임. 그런데, 현행 법률 중 상당수가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up>35)</sup>고 규정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sup>36)</sup>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 위와 같은 법 규정 실태는 데이터 3법 개정 시 제안이유로 들고 있는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3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검색한 결과 ‘기본법’의 제명을 가진 법률은 2022년 6월 현재 「행정기본법」을 포함하여 74건의 법률이 있음.

32) 우기택, 「기본법과 체계정당성에 관한 연구-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제』, 2016.9, 51면.

33) 예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으며, 이 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그 법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임.

34) 예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이 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에서 “이 법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35) 예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7조 제2항 등이 있음.

36) 예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제5항 등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와 같은 입법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성격을 종전과 같이 일반법적 성격을 갖도록 규정하는 것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와 같은 법적 성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sup>37)</sup> 해당 개정안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그대로 두고, 기본법에서 주로 규정하는 방식인 지도적·기준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상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할 것임. 체계정당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법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법의 지도적·기준적 성격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 28. 정부제출, 의안번호 12723]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신 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개별 법률과의 관계를 일반법적 지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우선 적용하도록 할 것인지, 특별법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핵심 규정에 대해 일부 우선 적용 하도록 할 것인지, 개별 법률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우월성을 갖는 기본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나.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의 차이와 법체계

- 먼저 가명처리에 대한 정의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3장제3절에서 기술한 바 있고, 가명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과 「암관리법」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결국 가명처리의 정의의 차이에 관한 문제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나 두 개념이 일치하는지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다음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중 ‘익명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총 4개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신용정보법 외에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 이 중

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의안번호 12723, 2021.9.2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는 개념정의 없이 ‘익명처리’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따르면,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거나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또는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가 적용되며, 신용정보법 제2조제17호의 익명처리 개념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법체계상 익명처리에 관한 개념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위 3개의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해 우선 적용되고, 위 3개의 법률 사이에도 우선 적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익명처리는 각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의 개념과 방법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법체계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3.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형평성 평가

#### 가. 개인정보의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sup>38)</sup>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권 행사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①에서 ④까지를 단지 ‘고려’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가명처리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존기간, 동의거부 권리 등을 알리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나 처리목적 등에 대한 고지 의무, 보유기간이나 정보이전의 제한 또는 정보유출 사실을 알릴 의무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음.

3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권리를 말한다.

- 신용정보법 제40조의3에서도 ‘가명정보’이지만 어떤 어떠한 목적이나 조건 없이 그리고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인정된 각종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가명정보의 생성 자체부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이로써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각종 권리와 의무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율방식은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성과 수집된 목적과 다르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됨.
- 가명처리만으로도 광범위하게 개인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어도 개인정보주체는 기업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누구에게 제공되며, 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공유되는지 등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나.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사후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주체의 동의만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지역으로도 이전이 가능함.
-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 체결 금지, 이용자의 동의, 동의 시 고지 사항 및 보호조치 의무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나, 이전 받은 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인 경우 법의 장소적·대인적 효력의 한계로 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데이터의 활발한 국가 간 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는 국내의 개인정보 침해와는 달리 침해의 정지나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관리 가능한 차원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 4. (생략)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 ③~⑥ (생략)
-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③ (생략)

**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 신용정보법에서는 자동화평가(profiling)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용정보주체가 유리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의 정정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만 가지고,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이용하는 것에 반대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점차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추세라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에서는 이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sup>39)</sup>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 9. 28 정부제출)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5. (현행과 같음)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개인정보가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의안번호 12723, 2021.9.28.

## Chapter

## 5



##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43 1.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 정비
- 44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의 규정 정비
- 45 3. 가명정보 활용 방식 보완
- 46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및 독립성 강화
- 47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정비

## 1.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 정비

- 제4장제2절 체계성 평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일반법적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해당 개별법이 특별법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sup>40)</sup>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집행에 장애가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개선 방안으로는 ① 개인정보보호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방식<sup>41)</sup> ②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일반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대신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지도적, 지침적 성격을 규정하는 방식<sup>42)</sup> ③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개정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sup>43)</sup>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핵심 규정만 한정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세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40)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임.

4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2)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 예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재난안전통신망법」 등이 있음.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별법의 특성과 거리가 있고,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적인 규정이나 도덕적 촉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규정, 가치 질서에 대한 입법자의 의지를 담은 규정들은 법적으로는 관철될 수 없고 단지 간접적으로만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sup>44)</sup>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현행 법제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을 적용하도록<sup>45)</sup> 하고, 정부에서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도 반영하여 다른 개별법에 대한 유도적, 지침적 성격을 갖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함.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의견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의 규정 정비

-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4차 산업시대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고려할 때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를 규정하는 법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와 같은 법체계를 통한 해석으로는 운영상 혼란을 피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와 방법 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용정보법 등 다른 개별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개념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가명가공정보 및 익명가공정보를 각각 정의하고, 가명가공정보와 익명가공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의 유형별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44) 우기택, 「기본법과 체계정당성에 관한 연구-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제』, 2016.9, 61면.

4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그 밖의 기술(記述) 등[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으로 기재되거나, 기록, 또는 음성, 동작 그 밖의 방법으로 표현된 일체의 사항(개인식별부호를 제외한다))]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쉽게 조합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2. 개인식별부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

⑤ 이 법률에서 “가명가공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개인정보의 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 다른 정보와 조합하지 않는 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된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삭제하는 것

⑥ 이 법률에서 “익명가공정보”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개인정보의 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된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삭제하는 것

⑦ 이 법률에서 “개인관련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가명가공정보 및 익명가공정보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3. 가명정보 활용 방식 보완

-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하나이지만, 익명처리와 달리 그 안전성 확보의 정도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불완전함.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는 언제나 재식별의 위험을 개념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가명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은 우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통한 가명정보의 생성과 그렇게 생성된 가명정보의 이용·제공·활용을 분별하고, 각 분별된 규율영역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가명정보의 생성 자체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렇게 생성된 가명정보를 생성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①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②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공익적 목적을 요구하면서 엄격한 절차의 이행으로 규제하는 입법태도<sup>46)</sup>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더 체계정합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만약 현행 법령과 같이 가명정보의 생성 자체부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개인정보

46) GDPR 제89조제1항은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조치’의 하나에 ‘가명처리’가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을 위한 개인 정보의 추가 처리는 개인정보 수집의 본래 목적과 양립가능한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b호).

보호를 위한 각종 권리와 의무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율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개인정보주체에게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처리중지요구권’(opt-out)<sup>47)</sup>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가명처리만으로도 광범위하게 개인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어도 개인정보주체에게 그의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가명처리되는지, 가명처리 후 어떻게 활용되고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왜 어떠한 용도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와 결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음.
- 가명정보의 보유기간과 관련해서도 보유기간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영구보유의 길을 열어줄 것이 아니라 가명정보 처리 시 일정한 보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sup>48)</sup>

####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및 독립성 강화

- 입법평가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가 독립성 및 실효적 권한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적인 요소 중 두 가지인 ① 정부의 지시·승인·간섭 등에서 분리·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② 투명성, 보편성, 다원성을 갖춘 구성원 임명과 조직 구성 절차를 갖춘 필요성이 요구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유사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직속으로 두도록 하고, 소관 업무 중 국무총리의 지휘·감독권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7)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중지요구권’(opt-out)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공익 또는 정당한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주체가 사후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를 중지해야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사후거부권’으로 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 ‘처리정지권’과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김송옥, 「유럽연합 GDPR의 동의제도 분석 및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주는 시사점」, 『아주법학 제13권 제3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82-183면, 이인호,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잘못 설계된 동의제도-」, 개인정보보호 포럼 정기토론회, 2019.10.1, 20-22면.

48) 최규환,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이론과 실무 2021-A-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94-96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의견
<p>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u>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p> <p>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p> <p>&lt;신 설&gt;</p>	<p>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 ----- <u>대통령</u>----- -----.</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바, 위원 인선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 적법성,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위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종전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후퇴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특히,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삭제한 부분은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정비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명정보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GDPR의 DPO(Data Protection Officer)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해야 함.<sup>49)</sup>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하여 GDPR 제37조제5항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문적 자질,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실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제39조에서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근거하여 지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자격증과 같은 별도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는 않더라도 전문적 자질과 관련한 일반적 요건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내부 임직원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임. 전문적 자질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자질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같은 일반적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등과 같은

49) 한윤수·류현숙,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20.3, 18면.

정보통신기술 또는 법률적 지식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나 자격증 보유 등과 같은 전문적 자질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구체적인 자격기준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sup>50)</sup>이나,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5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sup>51)</sup> 등을 참고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일반적인 직위와 정보보호 유관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 규모 등에 따른 고려 사항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50)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통신기술사, 공인정보시스템가사사(CISA) 등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1) 학위 취득,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의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유관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 일정 기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9년 만에 드디어 통합 감독기구 탄생 - 데이터3법 본격 시행으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출범-”, 2020. 8. 5.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4495, 2020. 1. 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2723, 정부 제출, 2021. 9. 28.
- 일본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七号).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9. 8. 21.
- 강현철,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일반론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김대희·강현철·류철호,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9.
- 김은찬·김은영·이효찬·유병준,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국내 금융 및 제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저널』, 2021. 9. 30.
-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3법 개정관련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2021. 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U 진출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핸드북』, 2019.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21.
- 배영임, 「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의 시작」, 경기연구원, 2020. 2.
- 산업일보, “데이터 3법 개정, 개인정보보호와 이해 상충 문제 해소 준비 필수”, 2020. 1. 23.
- 신아일보, “(연기영 교수 기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2022. 1. 24.
- 심우민·박용숙·박지윤,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9.
- 우기택, 「기본법과 체계정당성에 관한 연구-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제』, 2016. 9.
- 윤주호, 「금융 분야에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관련 국내 법제 동향」,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1호(통권 제25호)』, 2020. 5.
- 이재훈,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제언」,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20. 3.
- 이준한, 「제4차 산업혁명과 국회의 입법방향 및 과제」, 인천대학교, 2017.
- 전승재·권현영,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85호』, 2019. 1.

- 전승재·권현영,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85호』, 2019. 1.
- 한윤수·류현숙,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20. 3.
- 홍성민·김은영·양천수·이동진, 「'K-방역'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21.
- 최규환,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이론과 실무 2021-A-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입법평가 ISSUE PAPER 22-14-②

## 데이터 3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 방안

발행일 2022년 7월 31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 F. 044. 868. 9913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데이터 3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F. 044. 868. 9913

